

현안분석 2012-1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 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

이상모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2-1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 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

이 상 모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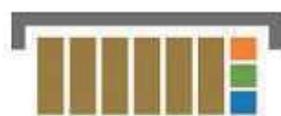
- 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China Free Trade Agreements
-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TAs -**

연구자 :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원)

Lee, Sang-Mo

2012. 12.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FTA에 관한 연구는 주로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 치우쳐 있어 FTA 협상시 참고할 법적 분야의 쟁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특히 법적 분석을 담고 있는 중국 FTA 관련 논문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2009년 이전의 논문들로서, 중국이 2009년 이후에 체결한 4건의 FTA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이 지난 2003년 이후 체결한 11건의 FTA의 법적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상품무역 분야를 대상으로 한 수평적 및 수직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적 구조 및 쟁점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

II. 주요 내용

- FTA를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와 입장을 살펴본 후,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FTA를 그 협정문의 성질에 따라 그 대상 국가를 구분하여 각 유형별 쟁점에 대한 법적 구조를 분석함

-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과 관련된 규정의 비교
-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규정의 비교
-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와 관련된 규정의 비교
- 세이프가드조치 관련된 규정의 비교

Ⅲ. 기대효과

- 중국이 체결한 FTA의 법적 분석, 특히 협정문의 주요 조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협정문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함
-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중국이 체결한 11건의 FTA에 대한 수평적·수직적·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러한 법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

▶ 주제어 : FTA, CEPA, ECFA, 내국민대우,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Most Free Trade Agreements (FTAs) related studies have rather focused on the analysis of FTAs' economic impac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mprehensive research on legal aspects of FTAs, i.e., legal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an FTA is negotiated.
- Although some research papers dealt with legal aspects of China's FTAs, they have been outdated and do not reflect the four FTAs that China has signed since 2009.
-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of eleven FTAs which China has signed since 2003, through horizontal and vertical analysis on trade in goods.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vide reference resources for the current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ased on reviews and analyses on the legal structure of the FTAs signed by China and related legal issues.

II. Main Contents

- This study first reviews China's attitude towards and position on FTA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FTAs signed by China. Then, it categorizes the FTAs in accordance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counterpart countries and analyze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FTAs.
- Comparative review and analysis of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related provisions
- Comparative review and analysis of Rules of Origin and Related Customs Procedures
- Comparative review and analysis of regulations concern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omparative review and analysis of regulations concerning Safeguard Measures

III. Expected Effect

- Through legal analysis on the China-signed FTAs and majors provisions of the FTAs, this study reviews China's attitude towards and position on the FTAs and provides comprehensive legal analyses on the China-signed FTAs.

□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vide reference resources for the current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ased on reviews and analyses on the legal structure of the FTAs signed by China and related legal issues.

▶ Key Words : FTA, CEPA, ECFA, National Treatment, Rules of Origin, Trade Remedie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 2 장 중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17
제 1 절 중국과 FTA	17
1.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주의와 중국	17
2. 중국의 FTA 체결목적과 추진전략	19
제 2 절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과 구조	22
1. 중국의 FTA 체결현황	22
2.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특징	32
3. 중국이 체결한 FTA의 규율대상별 비교	33
제 3 장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비교분석	37
제 1 절 개념과 유형	37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39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39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40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43
4. 중·뉴질랜드 FTA	46
제 3 절 평 가	47
제 4 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51
제 1 절 개념과 유형	51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53
1. 중·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54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55
3. 중국-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57
4. 중·뉴질랜드 FTA	60
제 3 절 평 가	61
1. 완전생산기준	61
2. 실질적 변형기준	67
3. 보충적 판정기준	70
제 5 장 반덤핑 조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73
제 1 절 개념과 유형	73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75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75
2. 중국-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75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77
4. 중·뉴질랜드 FTA	79

제 3 절 평 가	80
1. 반덤핑 조치	81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82
제 6 장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85
제 1 절 개념과 유형	85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86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86
2. 중국-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87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90
4. 중·뉴질랜드 FTA	96
제 3 절 평 가	98
제 7 장 결 론	103
참 고 문 헌	10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난 2012년 5월과 11월 한·중 정상회담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을 통하여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 및 지역경제협력체의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는데, 만약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이는 무역 규모에서 단연코 유럽의 EU, 북미의 NAFTA, 동남아시아의 ASEAN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이에 중국이 체결한 FTA 및 관련 국내규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데, 기존의 연구는 주로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각 분야별·특정 이슈에 대한 단편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협정 전체를 일견할 수 있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법적 분석을 다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법적 분석을 다룬 연구 역시 2009년 이전의 논문들로서,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상품무역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및 각종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2009년 이후에 체결한 뉴질랜드, 칠레, 페루 및 코스타리카 등의 4건 FTA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FTA간의 상호간 비교 분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이 지난 2003년 이후 체결한 전 FTA의 법적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각각의 FTA에 대한 수평적 및 수직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적 구조 및 쟁점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이 체결한 11개의 FTA, 즉 2003년에 체결한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에 관한 협정(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2005년에 발효한 중·ASEAN FTA, 2006년에 발효된 중·칠레 FTA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¹⁾(Asia - Pacific Trade Agreement: APTA), 2007년에 발효한 중·파키스탄 FTA, 2008년에 발효한 중·뉴질랜드 FTA, 2009년에 발효한 중·싱가포르 FTA, 2010년에 발효한 중·페루 FTA와 중·대만 FTA(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및 2011년에 발효한 중·코스타리카 FTA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중 한국과 중국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APTA는 그 규율대상이 상품무역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규율범위 또한 협소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이 체결한 10개 전체 FTA의 현황과 법적 구조를 개괄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 중국이 체결한 FTA를 그 대상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 Pacific Trade Agreement)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 Social Commission of Asia & Pacific: ESCAP)에서 “방콕협정”(Bangkok Agreement)이라 부르던 것을 2005년 11월 2일 ESCAP 개발도상 국가간 무역협상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정에서 개칭된 것을 말한다. 1967년 방콕협정의 최초회원국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5개국이었으며, 2002년 1월 중국이 가입을 하였다. 그 후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상 및 협정활성화를 위해 2005년 11월 2일에 개정되어 그 명칭이 APTA가 되어, 2006년 1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APTA가 발효되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5개국이나, 라오스는 자국의 양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현재 유효한 가입국이 아니지만, 회원국으로부터 관세특혜를 부여받고 있다. <http://www.unescap.org/tid/apta.asp>.

첫째, 중국의 독특한 1국가 2체제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홍콩, 마카오, 대만간의 FTA이다. 이 3개의 FTA는 일반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국가와 국가(독립 관세영역 포함)간의 FTA 뿐만 아니라 중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도 규제방식 및 내용에서 사뭇 다른 독특한 중국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FTA 전략을 추진한 이래 체결된 최초의 FTA로서 중국의 초기 입장 및 상기 관세영역에 대한 관대함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중국이 FTA 본연의 경제적 효과 보다는 중화경제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체결한 ASEAN, 싱가포르, 파키스탄간의 FTA이다. 중국은 상기 국가와의 FTA 협상시에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보다는 외교적 이익을 고려하였다.

셋째, 중국의 체결한 FTA 중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칠레,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의 FTA이다. 이중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는 개도국인 중국이 체결한 개도국간의 FTA이다.

넷째, 뉴질랜드는 최초로 선진국과 체결한 FTA이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시 참고할 중요한 자료라 사료된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FTA 체결 대상국가인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간의 FTA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한국과 중국간의 입장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필요한 경우, 한·ASEAN FTA, 한·싱가포르 FTA, 한·칠레 FTA, 한·페루 FTA의 내용도 해당 분야별로 있어 추가하여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중국 FTA의 국가별 유형화 이후, 상품무역분야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분야, 원산지규정분야, 반덤핑 및 상계조치 분야, 세이프가드 조치분야로 대분하여 각 FTA 간 법적 구조와 쟁점을 비교 분석한다. 다만 본 연구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 중 상품무역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며, 추후 서비스 무역분야, 투자분야 및 분쟁해결분야로 확장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 2 장 중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제 1 절 중국과 FTA

1.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와 중국

지역주의란 역외국지역(outside region)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의 정치적 실체들 간에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협정²⁾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시대적 구분에 따라, 1950년대 말부터 유럽에서 유럽공동체의 출범을 시작으로 1960년대의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의 설립 및 196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 확산된 지역주의를 말한다. 즉 구지역주의(1차 지역주의)와 1980년 후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 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2차 지역주의)로 나눌 수 있다.³⁾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도래’로 인해서 1980년 17개에 불과하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은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2년 1월 15일 현재 511개의 RTAs(각각의 상품 및 서비스 협정 포함)가 GATT/WTO에 통보되었으며, 이중 319개가 발효하고 있다.⁴⁾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화 추세의 편승 및 대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개별국가들의 노력으로 기인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아시아지역, 특히 FTA의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동북아시아

2) J.H. Jackson, W.J. Davey & A.O. Sykes, Jr.,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West publishing Co, 1995), p.464.

3) 허윤, “도하개발어젠다협상과 지역무역협정”, 『창업정보학회지』 제6권 1호, (2003.3). pp.319-320.

4) WTO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2012년 12월 25일 방문)

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들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기존 WTO 체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기인한다. 즉, 기존 GATT에 비해 광범위한 규율대상과 범위, 강화된 규범력 및 증가된 회원국 수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지만, 기존의 무역분야 이외에 가입국의 서비스, 투자, 환경, 노동 및 경쟁정책 등 각종의 무역자유화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EU와 NAFTA와 같은 지역 블럭화의 영향 확대, 미국과 유럽간의 대립 및 개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한 해결에 있어서도 명백한 입장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각종 무역 문제에 대한 다자의 합의 도출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효과 역시 신속하지 못하다. 따라서 다자주의적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이해관계국 상호간의 무역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함으로서, 기존의 WTO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추세는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1990년대 세계화가 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FTA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과 더불어 국내 경제정책에 있어서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을 지향하여 다자주의적 통상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최후의 순간까지 다자주의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한국과 일본 역시 그 입장을 변경하여 FTA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강력한 지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요구로 인해 FTA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 즉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 3(한·중·일) 정상회의, 2000년부터 지속된 각종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 1990년대 이전 단지 소수의 특혜협정인 방콕협정, 라오스·태국 특혜협정 등이 그 예이고, 199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현재 한국과 중국이 각각 1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역시 1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동북아 3국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역외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지역공동체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 지난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2. 중국의 FTA 체결목적과 추진전략

한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연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의 증대라는 경제적인 목적이 주를 차지한다. 즉 지역경제의 통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에 보다 경쟁적 환경을 유발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통상문제 및 각종 문제에 대한 협상력 제고 및 풍부한 자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정치·외교·군사 등 역내 안전보장을 위한 외교적 목적이 있다.

즉, 한 국가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생존(안보)과 번영(경제발전) 및 영향력 확대(국제적 지위 상승)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⁵⁾ 기본적으로 FTA는 무역을 발판으로 다원화된 경제협력 기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며, 참여국은 FTA를 통해 무역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이익(투자, 인력교류, 자원개발 등)과 경제외적 이익까지 추구한다. 심지어 FTA를 통해 회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상 회원국 간에 상호지지의 생존·발전 공간을 보장할 수 있다.⁶⁾ 이러한 FTA 체결

5)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아연 중국연구총서 1),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p.11-48.

6) 白當偉陳濟高, “區域貿易協定的非傳統收益”, 『外貿經濟國際貿易』,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第8期, 2003), pp.47-51. 憑雷, “均衡戰略利益-北美自由貿易協定的

이유는 중국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체결대상국가에 따라 그 우선사항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개방의 추진 및 국내경제제도 개혁의 가속화를 이루어 국가의 균형발전 등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적에 입각하여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10개 FTA 대상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의 확보와 중화경제권의 결속 도모 및 자원 확보 등의 정치적·외교적 목적이 경제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차치하고, ASEAN, 싱가포르 및 파키스탄과의 FTA 협상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중화경제권의 결속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제자유화 전략과 동아시아지역 리더로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역내 FTA 등 지역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⁷⁾ 그러한 태도는 중국이 ASEAN, 싱가포르 및 파키스탄과의 협상에 있어 보여준 적극적이고, 특정 쟁점분야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 자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가 중국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규모(각각, 0.34%, 0.29%, 0.13%)를 고려하건데, 그러한 FTA 체결로 인한 무역이익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와 FTA 체결을 진행한 것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의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FTA를 체결한 것처럼 보인다.

實施及經驗”, 『國際貿易』(北京, 第10期, 2005), pp.23-27.

7) 蔡宏明, “中國大陸合縱連橫台商定位何處?”, 『貿易雜誌』(台北: 第138期, 2003), pp.10~17.

〈 표 1 〉 중국의 국가별 무역총액 현황

(단 위: 백 만불)

	지역명	2011년					
		수 출	비 율	수 입	비 율	수출입량	비 율
	총 계	1,899,314		1,741,624		3,640,938	
1	미 국	324,856	17.10%	119,164	6.84%	444,020	12.20%
*	ASEAN(합계)	169,861	8.94%	192,467	11.05%	362,328	9.95%
2	일 본	147,290	7.75%	194,410	11.16%	341,700	9.38%
3	홍 콩	267,516	14.08%	10,381	0.60%	277,897	7.63%
4	한 국	82,925	4.37%	161,673	9.28%	244,598	6.72%
5	독 일	76,433	4.02%	92,759	5.33%	169,192	4.65%
6	호 주	33,907	1.79%	80,930	4.65%	114,837	3.15%
7	말레이시아	27,902	1.47%	62,017	3.56%	89,919	2.47%
8	러시아	38,886	2.05%	39,043	2.24%	77,929	2.14%
9	브라질	31,854	1.68%	52,649	3.02%	84,503	2.32%
10	사우디아라비아	14,851	0.78%	49,545	2.84%	64,396	1.77%
12	태 국	25,700	1.35%	39,040	2.24%	64,740	1.78%
14	인도네시아	29,257	1.54%	31,323	1.80%	60,580	1.66%
15	싱가포르	35,297	1.86%	27,760	1.59%	63,057	1.73%
19	베트남	29,088	1.53%	11,108	0.64%	40,196	1.10%
25	멕시코	23,981	1.26%	9,362	0.54%	33,343	0.92%
24	필리핀	14,257	0.75%	17,993	1.03%	32,250	0.89%
26	칠 레	10,823	0.57%	20,576	1.18%	31,399	0.86%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⁸⁾8) <http://www.kita.net/statistic/index.jsp>

중국 FTA의 추진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지만,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중국 상무부정책연구실의 관련 문헌에 따르면, 현재 중화권(홍콩, 마카오) → 아시아 → CIS 지역으로 FTA 추진 대상국을 확대중이며, 주요 교역국 중 ASEAN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하고, 이어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NAFTA, EU에 필적하는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고 CIS지역과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전형적으로 소규모 국가와 FTA를 우선 체결하여 FTA 협상 경험을 축적한다는 전략으로, 이는 FTA를 통한 시장다변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다.⁹⁾

제 2 절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과 구조

1. 중국의 FTA 체결현황

2012년 12월 현재 중국은 10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즉 “1국가 2체제”의 원칙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2003년에 체결한 ①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에 관한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② 중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인 2005년에 발효한 중·ASEAN FTA, ③ 중국이 최초로 남미와 체결한 FTA인 2006년에 발효한 중·칠레 FTA, ④ 중국과 우호동맹국가임을 재차 확인시켜준 2007년에 발효한 중·파키스탄 FTA, ⑤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남북형 FTA인 2008년에 발효한 중·뉴질랜드 FTA, ⑥ FTA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킨 2009년에 발효한 중·싱가포르 FTA, ⑦ 남미와 체결한 종합적 FTA인 2010년에 발효한 중·페루 FTA, ⑧ 중국이 중미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2011년에 발효한 중·코스타리카 FTA 및 ⑨ 2010년에 체결한 중·대만 양한경

9) 서창배, “中國의 FTA 政策에 담긴 政治·經濟的 含意”, 『韓中社會科學研究』(제 5권 1호, 통권 9호), pp.73-89.

제협력골격협정¹⁰⁾(명칭: 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이 있다.¹¹⁾

〈 표 2 〉 WTO에 보고된 중국의 FTA 체결현황

	범 위	유 형	WTO 통보일자	근거조항	발효일자
APTA (중국가입)	상 품	PSA	2004.4.30	권능부여조항	2002.1.1
홍 콩	상품 서비스	FTA/EIA	2003.12.27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03.6.29
마카오	상품 서비스	FTA/EIA	2003.12.27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03.10.17
ASEAN	상품 서비스	PSA/EIA	2005. 9.21 (상품) 2008.6.26 (서비스)	권능부여조항 GATS 제 5 조	2005.1.1 (상품) 2007.7.1 (서비스)
칠 레	상품 서비스	FTA/EIA	2007.7.20 (상품) 2010.11.18 (서비스)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06.10.1 (상품) 2010.8.1 (서비스)

10) 여기서 중·대만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와 중-홍콩/마카오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에서 CEPA는 Arrangement를 사용하고 ECFA는 국가 간 협정에 사용하는 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ECFA는 양국 의회에서 비준절차를 염두에 둔 발효규정, 종료조항 등 국가 간 협정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CEPA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고, ECFA가 더 국제법적 형식과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

11)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7) p.4. 중·대만 ECFA는 중국과 대만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골격을 규정하면서, 향후 본 협상의 의제와 일정을 규정하는 협정으로서, FTA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 WTO에 통보되지 않았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중·대만 ECFA를 FTA로 간주하여 설명을 한다.

제 2 장 중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범 위	유 형	WTO 통보일자	근거조항	발효일자
파키스탄	상품 서비스	FTA/EIA	2008.1.18 (상품) 2010.5.20 (서비스)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07.7.1 (상품) 2009.10.10 (서비스)
뉴질랜드	상품 서비스	FTA/EIA	2009.4.21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08.10.1
싱가포르	상품 서비스	FTA/EIA	2009.3.2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09.1.1
페 루	상품 서비스	FTA/EIA	2010.3.3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10.3.1
코스타리카	상품 서비스	FTA/EIA	2012.2.27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2011.8.1
중-대만	상품 서비스	FTA/EIA	-	-	2010.6.29

* FTA: Free Trade Agreement

* PSA: Partial Scope Agreement

*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 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중·대만 ECFA는 기본 협정으로서 WTO에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논의의 편의 상 추가

* 자료출처: WTO 웹사이트¹²⁾

이 외에도 중국은 GCC,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SACU, 스위스와 협상 진행중에 있고, 인도와는 공동연구를 완료하였다.

12)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표 3〉 중국이 협상진행 또는 공동연구를 완료한 FTA 현황

	범위	유형
협상중 8건	GCC	· 05.4월 협상 개시 · 09.6월 제5차 협상
	호 주	· 05.5월 협상 개시 · 11.7월 제16차 협상
	아이슬란드	· 07.4월 협상 개시 · 08.4월 제4차 협상
	노르웨이	· 08.9월 협상 개시 · 10.9월 제8차 협상
	SACU	· 04년 협상 출범
	스위스	· 11.1월 협상 출범 선언 · 12.2월 제4차 협상
	한 국	·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07.3월~10.5월, 5차례 회의) · 2012.05.02한-중 FTA 협상개시
	한중일	·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10.5월~11.12월, 7차례 회의) · 2012.11.20한-중-일 FTA 협상개시
공동연구 1건	인 도	· RTA 공동연구 완료(03.6월~07.10월, 6차례 회의)

* 자료출처: 외교통상부 웹사이트¹³⁾

(1)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에 관한 협정

2003년 6월 29일 중국과 홍콩은 「긴밀한 경제무역에 관한 협정(Closer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을 체결한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통하여

13) <http://www.fta.go.kr/china/policy/china.asp>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CEPA 체결의 배경은 크게 정치적·경제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CEPA를 통하여 ‘1국가 2체제(一國兩制)’ 통일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며,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홍콩 경제침체 탈출의 돌파구로 홍콩 경제에 도움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 배경은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과 홍콩의 CEPA 체결당시 중국은 ASEAN과의 FTA도 논의중으로 시장 개방을 이행함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개방 적응기를 설정하고 CEPA를 통해 홍콩을 그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홍콩을 대상국으로 선정함으로써 낙후된 서비스 시장의 개방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함이다.¹⁴⁾

(2) 중·ASEAN FTA: 중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

중국과 ASEAN FTA는 2002년 11월에 양자간 FTA 골격협정에 서명한 이래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차 중·ASEAN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투자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이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으로써, 양자간 FTA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ASEAN FTA는 아시아 지역 4대 경제축을 구성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경제규모 측면에서(11개국, 인구 19억 명, 국내 총생산액 약 6조 달러, 무역총액 4조 5000억 달러)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사이의 경제 긴밀화가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과 파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ASEAN FTA는 중국이 최초로 시도한 FTA이며, ASEAN 공동체가 개별 구성국이 아닌 공동체 전체로서 시도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¹⁵⁾

1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동윤, “중국·홍콩 「경제 파트너십 강화협정」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2003.8), pp.39-45 참조.

1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현정, “중국·ASEAN FTA(中國-東盟自由貿易區) 전면발효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2010.2), pp.12-15 참조.

〈 표 4 〉 중-ASEAN FTA 주요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 고
2002년 11월	중·ASEAN FTA 체결 기본협정 서명	2010년까지 단계적인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정 체결
2004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수확(Early Harvest)프로그램 시행 · 500여가지 농산품에 대하여 관세인하 조치 · 2006년 이 품목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조기수확(Early Harvest)프로그램이 시행되어 당해 연도 해당품목의 교역 증가율이 40%에 달해 전체 상품 수출·입 증가율(평균치)을 초과함
2004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무역협정(2005.7 발효) 체결 · 분쟁해결절차 합의(2005.1.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0여개 상품에 대해 관세인하 실시 · 민감·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2010년까지 관세철폐를 약정
2007년 1월	서비스협정체결	2007년 7월 발효
2009년 8월	투자협정 체결	2010년 1월 발효

(3) 중·칠레 FTA: 중국이 최초로 남미와 체결한 FTA

중·칠레 FTA는 서비스와 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 11월 18일 체결(2006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중·칠레 FTA는 2002년 칠레가 중국에 먼저 제안한 후 본격적인 협상은 2004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칠레 방문시 개시되어 4차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종결된, 중국이 ASEAN과의 FTA 체결이후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 협정이다. 중·칠레 FTA 체결은 양국간 무역의 증대보다 더 큰 틀에서 해석하여,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의 신

속한 발전에 따른 자원(특히 광물과 임산자원)의 공급처로서 남미에 주목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FTA가 남미와의 교류에 있어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¹⁶⁾

(4) 중·파키스탄 FTA: 중국의 우호동맹국가임을 재차 확인시켜준 FTA

중·파키스탄 FTA는 2006년 11월 24일 홍콩과 마카오와 체결한 CEPA를 제외하고, 중·ASEAN, 중·칠레 FTA에 이어 세 번째로 FTA를 체결하였다. 2004년 12월 중국·파키스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를 체결하는 동시에 양국이 FTA 공동연구 그룹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같은 해 12월 파키스탄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중·파키스탄 FTA는 기체결 조기자유화프로그램의 부분을 이루게 됨으로써 PTA협정의 내용이 FTA협상의 틀 안으로 흡수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동기로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육성 및 에너지 협력 강화, 그리고 중국의 서부 개발 촉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략적 동기로는 아시아지역 내에서의 리더십 강화 및 對美 견제와 차별화를 들 수 있다.¹⁷⁾

(5) 중·뉴질랜드 FTA: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남북형(南北型) FTA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7일 베이징에서 중·뉴질랜드 FTA에 서명하였는데, 동 협정은 3년 동안 15차 협상을 거쳐 2007년 12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이외에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 제조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1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초점』 (2005.11) 참조.

1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지나, “중-파키스탄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7.2) 참조.

낮은 비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상품협상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와 투자협상을 유보하는 방식의 낮은 FTA 전략을 고수하여 왔으나 뉴질랜드나 호주 등 선진국과 진행한 FTA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가 포괄적인 수준의 FTA 입장을 견지했고,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타결은 중국이 최초로 포괄적인 FTA에 일괄합의(single undertaking)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FTA 추진의 동기는 크게 외교안보상의 전략적 측면과 경제적 이익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외교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뉴질랜드 FTA 체결은 중국의 지역 리더십 강화, 對美 견제와 차별화 등의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는 해외 에너지·원자재 확보,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면화, 대(對)서구 우회수출 등), 시장경제지위(MES) 승인 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의 촉진,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활성화하고 중국 시장에서 뉴질랜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제적 이유가 FTA추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¹⁸⁾

(6) 중·싱가포르 FTA: FTA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킨 FTA

2008년 10월 23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베이징에서 중·싱가포르 FTA (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중·싱가포르 FTA는 2006년 8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9월까지 총 8차의 협상 끝에 타결되었고,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인력이동, 세관절차, 무역구제, TBT 및 SPS, 경제협력과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상품, 서비스,

1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한성·여지나, “중국·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8.5), 참조.

인력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의가 있다. 중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중·ASEAN FTA라는 다자적 FTA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다시 양자 FTA를 체결하였는데, 양자간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중·ASEAN FTA의 다자간 협상들의 개방속도보다 더 빠르고 폭넓은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싱가포르 FTA 서비스 협정문은 GATS와 중·ASEAN FTA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상호인정 분야에서 중국의 여타 FTA가 인정에 관련된 선언적 조항만 명시한 데 비하여,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인정(제66조), 인정협력(제67조), 인정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제68조) 조항을 삽입하여 상호 인정협력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기체결 서비스 FTA 보다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⁹⁾

(7) 중·페루 FTA: 남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종합적 FTA

중·페루 FTA(China-Peru Free Trade Agreement)는 중국이 체결한 FTA중 가장 신속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11개월간 6차례의 협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2008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페루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는 중·페루 FTA 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양국의 신속한 FTA 협상 타결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원자재 확보 수요와 페루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세 유지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페루 FTA의 상품 협정문은 중국의 기체결 FTA들에 비해 조항의 수와 포함범위가 넓으며, 농업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협정문은 서비스 교역(trade in service)과 비즈니스 인력(business persons)을 위한 임시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을 포함하고, 서비스 분야별 양허안과 임시입국 양허안이 부속서로 첨부되었는데,

1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지나, “중·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8.12) 참조.

중·페루 FTA는 GATS 양허안을 기준으로 양국이 좀 더 진전된 서비스 개방을 이룩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협상은 투자자유화 협정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으나, 일반 투자협정보다 더 개방된 수준에 도달하였고, 투자 장을 별도로 구성한 중국 기체결 FTA인 중·파키스탄 FTA, 중·뉴질랜드FTA와 비교할 때, 중·페루 FTA 투자 장의 내용은 중·파키스탄 FTA 보다는 진전되었고, 중·뉴질랜드 FTA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²⁰⁾

(8) 중·코스타리카 FTA: 중국이 중미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10년 4월 8일 중국 상무부 부장 천더밍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마르코 비니시오 루이스가 베이징에서 서명한 중·코스타리카 FTA 협정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인력이동, 지식재산권, TBT, SPS, 무역구제조치 등을 일괄 타결한 중미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이다. 2007년 6월 중남미지역에서 대만의 중요한 외교 교두보이던 코스타리카가 중국의 169번째 수교국이 되면서 대만의 외교적 입지가 한층 약화되었고, 이때부터 중국에서 FTA 구축 논의가 시작되었다. 코스타리카는 INTEL 공장이 진출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저비용의 우수인력이 풍부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주요 투자 고려국이며, 특히 코스타리카가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FTA를 통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으로 우회 진출하는 전초기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반면 코스타리카의 입장에서 미주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왔으며, 최초로 싱가포르, 중국 등과 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꾀하고,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기반을 유지하려 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코스타리카는 중요한 교역대상국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개방의 수준에서 볼 때 중·코스타리카 FTA가 큰 의

2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지나, “중-페루 FTA 타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9.1) 참조.

미는 없으나, 양국의 수교라는 독특한 정치적 계기가 작용한 FTA로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외교 각축장인 중미지역 국가와 처음 체결한 FTA라는 의의가 있다.²¹⁾

(9) 중·대만 양안경제협력골격협정(ECFA)

중국과 대만은 2009년 말까지 4차례에 걸친 양안회담을 통해 경제 이슈에 관한 12개 협정을 체결하였고, 특히 2009년 12월 4차 양안회담에서 중·대만 양안경제협력골격협정²²⁾(명칭: 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협상개시에 합의한 이후 3차례의 중·대만 ECFA 실무협상을 거쳐 2010년 6월 29일 5차 양안회의에서 중·대만 ECFA에 서명하였다. 이번 중·대만 ECFA 체결은 FTA의 체결 또는 완결이 아니라, ‘골격협정’의 체결로서 향후 본 협상의 의제와 일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대만 ECF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분야별 확대 협상을 개시하여 조속히 완결할 것을 명문화 하였다.²³⁾

2.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2012년 현재 총 10건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중국이 체결한 FTA의 특징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²⁴⁾

2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지나·김진오, “중·코스타리카 FTA 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0.5) 참조.

22) 중·대만 ECFA는 중국과 대만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골격을 규정하면서, 향후 본 협상의 의제와 일정을 규정하는 협정으로서, FTA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WTO에 통보되지 않았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중·대만 ECFA를 FTA로 간주하여 설명을 한다.

2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권혁재, 앞의 보고서, 참조.

24) 이외에도 신속한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자유화 추진, 원산지 규정의 상세화, 투자보호와 투자촉진의 병행, 서비스시장개방의 점진적 확대 등을 중국이 체결한 FTA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商务部研究院, 『中国自由贸易区战略』 (中国商务出版社, 2011),

(1) 남남형(南南型) 위주의 FTA

중국이 체결한 FTA의 특징으로 먼저 남남형 위주의 FTA를 들 수 있다. 즉 중국이 2012년 12월 현재 18개 국가 및 지역과 10개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개도국이며, 현재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4개국 중에서 11개국이 개도국이다. 이는 FTA 체결이후에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고 협상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2) 규율대상의 점진적 확대

중국이 체결한 FTA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점진적인 개방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관계가 밀접하며, 정치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경제공동체, 즉 홍콩, 마카오, ASEAN 등과 FTA 체결을 통하여 경험을 축적한 후, 무역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민감한 문제인 지적재산권보호, 특정분야의 개방, 환경과 노동표준, 분쟁해결제도 등과 같은 부문을 제외하고 비교적 협상이 용이하며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의 개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3. 중국이 체결한 FTA의 규율대상별 비교

중국이 체결한 FTA는 시기별, 대상 국가별로 규율하는 분야가 다르다. 이는 중국이 FTA에 대해서 그간 취해온 입장과의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은 초기에는 FTA 체결에 대한 경험 부족과 중국 국내사정으로 인해 가급적 상품무역 분야에 한정을 해서 FTA를

pp.12-20; 商务部研究院亚洲与非洲研究所, 『中国自由贸易区发展报告』(中国商务出版社, 2011), pp. 14-20 참조.

체결했다. 그 후 일련의 FTA 체결에 대한 경험 축적과 개혁 개방에 따른 국내사회의 발전을 통해 점차 서비스 투자 분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북북형 FTA라 불리는 선진국과 선진국간에서 다루고 있는 전 분야, 즉 상품무역분야, 서비스분야, 투자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남북형 FTA인 중·뉴질랜드 FTA이다. 중국은 중·뉴질랜드 FTA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 체결된 중·페루 FTA와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도 가급적 광범위한 분야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음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규율대상을 시기별로 나열하여 정리한 것이다.

< 표 5 > 중국이 체결한 FTA의 규율대상별 구조

		홍콩 마카오	ASEAN	칠 레	파키 스탄	뉴질 랜드	싱가 포르	페 루	코스타 리카	대 만
상 품 무 역 분 야	내국민대우	-	○	○	○	○	○	○	○	-
	관세철폐 /시장접근	○	○	○	○	○	○	○	○	-
	수량제한 금지	-	○	○	-	○	○	○	○	-
	원산지규정	○	○	○	○	○	○	○	○	-
	관세평가	-	-	-	-	○	-	○	○	-
	통관절차	-	-	○	-	○	○	○	○	-
	기술장벽 조치	-	○	○	○	○	○	○	○	-

제2 절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과 구조

		홍콩 마카오	ASEAN	칠 레	파키 스탄	뉴질 랜드	싱가 포르	페 루	코스타 리카	대 만
	위생 및 검역조치	-	○	○	○	○	○	○	○	-
	세이프가드 조치	○	○	○	○	○	○	○	○	-
	반덤핑상계 조치	○	○	○	○	○	○	○	○	-
	특정상품 규율	-	-	-	-	○	-	○	○	-
서 비 스 무 역 분 야	특정서비스 규율	○	○	○	-	-	-	-	-	-
	전기통신	-	-	-	-	-	-	-	-	-
	금 용	-	-	-	-	-	-	-	-	-
	자연인이동	-	-	-	-	○	○	○	○	-
투 자 분 야		○	○	-	○	○	○	○	-	○
지적재산권분야		-	-	-	-	○	-	○	○	○
정부조달 분야		-	-	-	-	-	-	-	-	-
기 타 특 정 분 야	경 쟁	-	-	-	-	-	-	○	○	-
	환 경	-	-	○	-	○	-	-	-	-
	노 동	-	-	○	-	○	-	○	-	-
	에너지	-	-	-	-	-	-	-	-	-
	전자상거래	-	-	-	-	-	-	-	-	-
	투명성	-	-	○	○	○	-	○	○	-
경제기술협력		-	-	○	-	○	-	○	○	-
분쟁해결제도		○	○	○	○	○	-	○	○	○
협정운영조직		-	○	○	○	○	-	○	○	○

제 3 장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비교분석

제 1 절 개념과 유형

관세란 수입상품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써, 무역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구성하여 국제무역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제한조치로서, WTO 회원국은 자국이 특정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일정한 최고세율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는 관세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하는 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또는 양자협상에 따라 관세를 감축 또는 철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철폐 협상에 있어 당사국 상호간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의 목록과 보호정도가 FTA 협상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이다.

이러한 관세철폐의 협상시 FTA 당사국들은 주로 기존 관세의 인상이나 새로운 관세의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관세동결 규정과 각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 규정한다고 규정하는 점진적 철폐규정 및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있다. 즉 제조업 및 일반상품의 경우, 즉시철폐 비중이 높고 기본적인 균등철폐 방식의 적용비중이 높지만, 기타 방식은 농수산물, 광물, 주력 제조업 등 각국의 민감품목에 주로 적용된다. 또한 선진국과의 FTA일수록 관세를 즉시 또는 단기에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높으며, 개도국과의 FTA일수록 관세를 장기에 철폐하거나 양허 스케줄상 예외로 분류하는 품목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²⁵⁾

25) 최낙균·정형곤·김한성,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pp.114-118.

〈 표 6 〉 관세철폐의 유형

구 분	철폐 방식	내 용
기본 유형	즉시 철폐 3년내 균등 철폐 5년내 균등 철폐 10년내 균등 철폐 15년내 균등 철폐	발효즉시 철폐 3년에 걸쳐 기준관세율의 동일 비율 인하 (일반적으로 3년차 1.1일부터 무관세 적용) 5년에 걸쳐 기준관세율의 동일 비율 인하 10년에 걸쳐 기준관세율의 동일 비율 인하 15년에 걸쳐 기준관세율의 동일 비율 인하
기 타	일정 %씩 인하 일정기간중 불균 등 인하 관세할당 쿼터 인상 계절관세 00년후 논의 재개 양허제외	발효 2년간 5%씩, 3~5년간 7%씩, 6~7년간 10%씩, 8년차 12%, 9년차 17%, 10년차 나머 지 20%철폐 등, 발효 즉시 20%인하, 3~7년차 10%인하, 8년차 나머지 30% 철폐 등 일정쿼터까지 무관세(또는 저율 관세), 초과 시 별도 기준 적용 일정 수입쿼터 설정후, 일정기간 경과시 쿼터 인상 12.1~4.30 수입분 즉시철폐, 5.1~11.30 수입분 8~15년차 균등철폐 등(과일류 등에 적용) 00년후 관세 철폐 방식 재논의 양허 제외(초민감품목)

* 자료출처: KORTA,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KORTA, 2007), p.64.

또한 WTO 회원국은 자국 영역내의 외국제품에 대해 자국제품과 동등하게 대우를 할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입 상품에 대한 수량할당(quota)이나 수출허가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관세나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입 상품에 해서는 안 되는데,²⁶⁾ 내국민대우의 적용방법은 각각의 FTA별로 상이하다.

이하에서는 내국민대우 규정, 관세양허의 방법 및 비관세조치에 따른 각 FTA 별 규정방법을 살펴본다.

26)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6), pp.174-185.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1. 중국 · 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각 협정별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 · 홍콩/마카오 CEPA	중 · 대만 ECFA
제 2 장 상품 무역 제 5 조 관 세 제 6 조 관세율 제한 및 비관세 장벽 각 부속서 I.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무역에 관한 중국의 관세제거 조치	제 2 장 무역과 투자 제 3 조 상품무역 제 4 장 조기수확 제 7 조 상품무역의 조기수확 부속서 1 상품무역의 조기수확상품 품목 및 관세인하 계획

(1) 내국민대우

중 · 홍콩/마카오 CEPA 및 중 · 대만 ECFA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에 대하여 1국가 2체제(一國兩制)²⁷⁾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규정이다.

(2) 관세양허

중국 · 홍콩/마카오 CEPA는 2004년 1월 1일부로 관세를 철폐하는 즉시철폐 규정을 두고 있다.(제5.1조) 중 · 대만간 ECFA 제3조(상품무역)

27) “1국가 2체제”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 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제11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할 수 있는 개혁개방 논리의 근거로 제기한 주장으로써,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반환시에 적용되었다.

는 관세양허를 즉시 철폐, 단계적 인하, 예외 또는 기타 상품의 3가지로 분류하고, 상품과 일부 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EHP)²⁸⁾을 시행하고 있다.(제7조) 이외에 동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상품무역협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완료하며, 협의의 대상에는 대해 관세인하 및 철폐방식,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SPS 및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1994년 GATT 제6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 의 조치 및 상호간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포함한 무역구제조치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비관세조치

중·홍콩/마카오 CEPA는 WTO 규정에 위반되는 비관세조치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원산지가 홍콩/마카오인 상품에 대하여 쿼터를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만 ECFA는 협정 발효 후 추가적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각 협정별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골격협정	제 3 장 상품무역 제 4 조 범 위	제 3 장 상품에 관한 내 국민대우와 시장접근

28)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해 협정 전체가 발효되기 전에 협정 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먼저 자유화(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하는 조치를 지칭한다. 권혁재, 앞의 보고서, p.5.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제 3 조 상품무역 제 6 조 조기수확 상품무역협정 제 2 조 내국조세와 국내 규범에 대한 내국민대우 제 3 조 관세인하 및 철폐 제 6 조 양허의 수정 제 7 조 WTO 원칙 제 8 조 수량제한 및 비 관세조치 제 10 조 양허의 가속화	제 5 조 내국조세 및 규 범에 대한 내국민대우 제 6 조 조세 제 7 조 관세인하의 가속화 제 8 조 수량제한 및 비 관세조치 제 9 조 국영무역기업	제 6 조 적용범위 제 7 조 내국민대우 제 8 조 관세철폐 제 9 조 행정경비 및 절차 제10조 국경조치와 관 련된 특별요건 제11조 상품무역위원회

(1) 내국민대우

중·ASEAN FTA(제2조), 중·싱가포르 FTA(제5조)의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되며, 동 협정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파키스탄 FTA는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에 합치되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되며, 동 협정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간에는 기술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즉 중·ASEAN FTA와 중·싱가포르 FTA는 1994년 GATT 제3조를, 중·파키스탄 FTA는 1994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라는 규정하고 있는데, 효력면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참고로 한·ASEAN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동일하게 1994년 GATT 제3조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중·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골격협정은 중국은 동협정의 발효일로부터 WTO 비회원국인 ASEAN 회원국(라오스, 베트남²⁹⁾)에 대하여 WTO 규정에 따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2) 관세양허

중·ASEAN FTA는 품목별 관세철폐 방식 대신 국가별·구간별 관세율의 권역을 설정하고, 상품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5-10년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골격협정 제6조에 따라 중·대만 ECFA와 같이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철폐 가속화 계획 시행하는데,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일반품목 중 최소 40% 이상 품목에 대해 0~5%로 감축하고, 2007년 1월부터 60% 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싱가포르 FTA는 중·ASEAN FTA의 상품협상을 기본으로 하여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해 2010년까지 9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출품에 대해서는 발효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영(零)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파키스탄 FTA는 즉시철폐 없이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4단계)에서는 3년내 철폐, 5년내 0~5%로 인하, 5년내 50%인하, 5년내 20% 인하로 구분하고, 2단계에서는 발효 6년차 이후 가능한 조속히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 1월 1일부터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³⁰⁾

29) 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에 WTO에 가입하였다.

30) 중국은 ASEAN,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EHP를 활용한 바 있으나 농산물에 한정되거나(ASEAN) 교역액이 작아(파키스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만수·이승신·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7) p.2.

(3) 비관세조치

중·ASEAN FTA는 WTO의 관련 원칙의 준수에 동의하고, WTO 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수량제한조치도 유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싱가포르 FTA는 WTO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량제한조치도 시행할 수 없고, WTO협정 및 동 협정에 따르지 않는 한, 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또는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없으며, 양국간의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제공하지 않도록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파키스탄 FTA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각 협정별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제 3 장 상품에 관한 내국민대우와 시장 접근	제 2 장 상품의 내국민대우 및 시장진입	제 3 장 상품무역의 내국민대우와 시장진입
제 6 조 적용범위	제 6 조 범 위	제 7 조 적용범위
제 7 조 내국민대우	제 1 절 내국민대우	제 1 절 내국민대우
제 8 조 관세제거	제 7 조 내국민대우	제 8 조 내국민대우
제 9 조 행정비용 및 절차	제 2 절 관세인하	제 2 절 관세인하
제10조 지리적 표시	제 8 조 관세인하	제 9 조 관세인하
제11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요건	제 3 절 특별기구	제 3 절 특별기구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제12조 농산물수출보조금 제13조 상품무역 위원회 제14조 정 의	제 9 조 관세면제 제10조 상품의 임시 진입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11조 수출입제한 제12조 수입허가 제13조 행정비용 및 절차 제 5 절 기타조치 제14조 관세평가 제 6 절 농 업 제14조 관세평가 제15조 적용범위 제16조 농업 수출보조금 제17조 국영무역기업 제18조 농산물 국내지원제도 제19조 가격밴드제도 제 7 절 제도규정 제20조 상품무역위원회 제 8 절 정 의 제21조 정 의	제10조 상품의 임시진입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11조 수출입제한 제12조 수입허가 제13조 행정비용과 절차 제 5 절 기타조치 제14조 관세평가 제 6 절 농 업 제15조 적용범위 제16조 농업수출보조금 제 17조 농산물국내지원제도 제 7 절 제도규정 제18조 상품무역위원회 제 8 절 정 의 제19조 정 의

(1) 내국민대우

중·칠레 FTA(제7조), 중·페루 FTA(제7.1조) 및 중·코스타리카 FTA는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되며, 동 협정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페루 FTA(제7.2조) 및 중·코스타리카 FTA(제8.2조)는 이러한 내국민대우 규정은 부속서 1(내국민대우의 예외와 수출입제한)에 열거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³¹⁾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양허

중·칠레 FTA는 즉시(2년내: 중국양허 추가), 5년내, 10년 및 예외(쌀 등)로 구분하여,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칠레 FTA에서는 민감품목 리스트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자국 산업에 영향이 큰 품목들의 관세는 5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고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은 관세철폐계획 예외항목으로 제출되었다.³²⁾

중·페루 FTA는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많은 14개 카테고리 분류를 사용하였으며, 즉각 철폐부터 최장 17년 내 단계적 관세철폐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농산품을 위주로 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대 품목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중·코스타리카 FTA는 A(즉시철폐), B(5년 내 철폐), C(10년 내 철폐), D(15년 내철폐), E(예외품목), F(무관세쿼터) 등 6단계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1) 중·페루 FTA 부록 1: 제7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출입제한)는 다음 조치의 지속, 즉각 갱신 및 개정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관련된 수입상품에 대하여 페루조치의 시행: (a) 중고 의류와 신발, 중고 차량과 발동기, 부품, 중고타이어 및 중고 제품, 방사성 원료로 사용되는 중고 제품과 설비. (b)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

(2) 중·코스타리카 FTA 부록 1는 제1부(코스타리카의 조치)와 제2부(중국의 조치)에서, 적용된 국내법과 동 협정 제150조(일반예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와 자연자원과 관련된 조치 및 WTO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코스타리카 국내법에 따른 원유, 원료 등의 수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2) 여수옥, 앞의 보고서, p.3.

(3) 비관세조치

중·페루 FTA 및 중·코스타리카 FTA는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근거하지 않는 한, 어느 국가도 비관세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없으며, 일방의 여하한 상품의 수출 또는 타방 국경내로의 수출 또는 수출판매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GATT 1994 제11조 및 그 주해가 필요한 수정을 가한 후 동 협정에 수용되어 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부속서 1(내국민 대우와 수출의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칠레 FTA는 관련규정이 없다.

4. 중·뉴질랜드 FTA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3 장 상품무역	제10조 농산품 수출보조금
제 5 조 범 위	제11조 비관세조치
제 6 조 내국민대우	제12조 소비자보호
제 7 조 관세철폐	제13조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제 8 조 관세철폐의 가속화	제14조 중간 심의기구
제 9 조 행정비용 및 수속	제15조 연락처
	제16조 상품무역위원회

(1) 내국민대우

중·뉴질랜드 FTA(제6조)는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되며, 동 협정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여타의 FTA상의 내국민대우 규정과 조금 상이하다.

(2) 관세양허

중·뉴질랜드 FTA는 동 협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세를 증가하거나 증설할 수 없으며, 각 당사국은 협정발효일로부터 타방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가속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인하유형은 즉시철폐, 2009~2019년 까지 7단계로 나누어 순차적 철폐, 을 제품 국별 관세할당, 양허제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비관세조치

중·뉴질랜드 FTA는 WTO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동 협정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된 조치이외에, 일방은 타방으로부터의 제품의 수출 또는 타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평 가

이상으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과 관련된 주요규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내국민대우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이 체결한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FTA에서는 ‘1국가 2체제’의 특성상 내국민대우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7개국과의 FTA에서는 모두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양허와 관련하여, 양허방식은 국가들마다 상이하다. 즉, 중·ASEAN FTA, 중·파키스탄 FTA 및 중·대만 ECFA는 FTA 발효이전에 적용되는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규정하고 있고, 중·ASEAN FTA는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을 나누어서 관세양허를 규정한 반면, 나

며지 FTA는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양허를 하였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 FTA에는 중·ASEAN FTA와 같이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³³⁾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없는 중·파키스탄 FTA와 중·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두 비관세조치의 유지 및 채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기술방법은 서로 상이하다. 즉 중·페루 FTA와 중·코스타리카 FTA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는 반면, 기타 FTA는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않은 비관세조치의 유지나 채택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중·페루 FTA와 중·코스타리카 FTA는 수출제한 금지조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7〉 각 협정별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비교

	내국민대우	관세양허	비관세조치
중·홍콩 CEPA	관련 규정 없음	즉시 철폐	WTO 규정에 위반되는 비관세조치를 금지, 쿼터시행금지(중국)
중·마카오 CEPA	관련 규정 없음	즉시 철폐	WTO 규정에 위반되는 비관세조치를 금지, 쿼터시행금지(중국)
중·대만 ECFA	관련 규정 없음	즉시철폐, 단계적 인하, EHP 규정	협정이 발효한 후 6개월 이내에 비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33) 2012년 5월 12일자 중앙뉴스,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8744.

	내국민대우	관세양허	비관세조치
중·ASEAN FTA	GATT 제 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 최혜국대우 규정 있음	일반 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인하 및 철폐 관세철폐 가속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EHP 규정	WTO 원칙준수 규정 어떠한 비관세조치 및 수량제한의 금지
중·싱가포르 FTA	GATT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	중·ASEAN FTA 상품협상을 기본으로 하여 더 가속화된 관세양허	WTO 및 동 협정에 기하지 않은 수량제한조치의 유지 및 채택금지, 투명성확보
중·파키스탄 FTA	GATT 제3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단기적 철폐를, 2단계는 조속한 관세철폐 EHP 규정	관련규정 없음
중·칠레 FTA	GATT 제3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	4(5)단계에 따른 인하 및 예외항목	관련규정 없음
중·페루 FTA	GATT 제3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 내국민대우 예외 규정 있음	14계 단계에 다른 단계적 인하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 금지, 수출제한금지조치 예외규정 있음

제 3 장 내국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비교분석

	내국민대우	관세양허	비관세조치
중· 코스타 리카 FTA	GATT 제3조 및 주 해는 ‘필요한 변경 을 가하여’ 동 협정 에 수용 내국민대우 예외규 정 있음	6단계에 따른 단 계적 인하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 금지 금지, 수출제한금지조치 예외 규정 있음
중· 뉴질랜드 FTA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 에 수용되어 일 부가 된 GATT 제3조 및 주해에 따라 부여	7단계에 따른 인 하, 국별관세할당, 양허제외	WTO 협정에 인정하는 조치 이외의 비관세조치의 채택이 나 유지 금지

제 4 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제 1 절 개념과 유형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이 생산되고 제조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 및 행정결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 등과 같이 비특혜적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개도국이나 FTA 회원국에 대한 특혜적 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³⁴⁾(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이 있다.³⁵⁾ 여기서 원산지 판정이란 어떤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이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이며, 원산지 확인이란 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며, 원산지 표시란 판정된 원산지를 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주소, 라벨링 등)하는 것이다. 관세가 통일적으로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부과되거나 무역장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하다.³⁶⁾

일반적으로 원산지 기준은 FTA 상대국과의 교역량 및 산업의 분업화 정도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범위와 수가 확대되면서 원산지규정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34) 특혜 원산지규정은 일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 등의 원산지 규정이나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특혜관세 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말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당사국들간의 특혜대우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조문별 유형분석(산업연구원, 2003) pp.42-44.

35) 최승환, 앞의 책, p.262.

36) 최승환, 앞의 책, pp.28-29.

무역왜곡이나 무역장벽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³⁷⁾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기준은 크게 ‘완전생산 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이 있고, 이러한 실질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다. 그리고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 이외에 실질변형기준을 보충하는 보충적 원산지기준이 있으며, 여기에는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최소가공기준,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불인정, 역외가공 인정 등이 있다.

〈 표 8 〉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결정기준		내 용
완전생산기준		어떤 물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1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실질적 변형 기준	세번변경기준	수입원재료 가공을 통해 세번(HS코드) 변경이 일어난 경우, 즉 일정단위 이상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부가가치기준	제품 생산과정중에 창출된 전체 부가가치중 일정 부가가치 이상 창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특정공정기준	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특정 공정을 수행했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보충적 원산지 기준	최소허용기준	역외산 원재료 사용 비율이 일정비율(일반적으로 10%) 이하이면 세번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완제품 생산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누적기준	역내산 원재료 이용시, 이를 국내산 원재료로 누적 인정하여 원산지 판정

37) WTO. 2002.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REG/W/45.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pril) p.3.

원산지결정기준		내 용
	직접운송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
	역외가공인정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

여기서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조항의 포함여부가 한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건데 특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 지난 한·미 FTA 협상에서 살펴보듯이 개성공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여부는 한국이 FTA 협상시 마다 부딪히는 최대 난제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행히도, 지난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의 선언과 더불어 4가지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양국은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인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중국이 체결한 FTA는 원산지 기준을 분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① 중·칠레 FTA, 중·뉴질랜드 FTA, 중·코스타리카 FTA 및 중·대만 ECF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제품, 완전하게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제품 및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하였지만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② 기타 6개 FTA는 완전 획득 또는 생산한 제품과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았지만 원산지 부합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⁸⁾

38) 완전하게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제품도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제품의 일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입법기술상의 차이로 판단된다. 최송자, “중국이 체결한

1. 중 · 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 · 홍콩 CEPA	중 · 홍콩/마카오 CEPA	중 · 대만 ECFA
제 3 장 원산지 제10조 원산지 규정 부속서 2. 상품 무역에 관한 원산지 규정 ³⁹⁾ 부속서 3. 원산지 인증 과 허가 절차	제 3 장 원산지 제10조 원산지 규정 부속서 2. 상품 무역에 관한 원산지 규정 부속서 3. 원산지 인증 과 허가 절차	부속서 2. 상품무역 조 기수확상품에 관한 임시 원산지규칙

(1) 완전생산기준 관련 조항

중 · 홍콩/마카오 FTA는 완전 획득 또는 생산제품의 항목으로 10가지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중 · 대만 ECFA으로 9가지를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변형기준 관련 조항

중 · 홍콩/마카오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기준, 기타기준 및 혼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집적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여,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30%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한다. 주요 공정절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특정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 비교연구,” 『통상법률』 제95호(2010. 10)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최문, 이상현,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비교연구-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제10집 2호, 2009)이 있음.
39) 동 원산지규정은 2005년 10월 18일과 10월 21일 제2차 보충협정에서 각각 일부 개정되었다.

원산지규정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타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원산지규정에서 당사국간에 합의를 거쳐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를 제외한 기타기준을 원산지판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혼합기준을 일반원산지규정에서 원산지판정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대만 ECF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 기준 및 기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단위 세번변경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RVC의 공제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절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특정원산지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타 기준과 혼합기준을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원산지 보충기준 관련 조항

중·홍콩/마카오 FTA 및 중·대만 ECFA는 원산지판정의 보충기준으로 중성성분 또는 간접재료, 누적조항, 미소함량, 포장조항,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 미소가공 또는 처리, 부속품·예비품 및 공구, 세트, 전람 및 직접 운송 등의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제 5 조 원산지규정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2	제 4 장 원산지규정 제10조 정 의	제 4 장 원산지규정 제12조 정 의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상품특정원산지규정”와 부속서 3 “중국·ASEAN 자 유무역지역 원산지 규정”	제11조 원산지기준 제12조 완전생산제품 제13조 역내가치포함 비율 제14조 원산지 누적규정 제15조 특정 생산규정 제16조 최소허용수준 제17조 최소가공 및 처리 제18조 직접운송 제19조 포장의 처리 제20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21조 대체가능한 재료 중립요소	제13조 원산지기준 제14조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15조 완전 획득되지 않거 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제16조 원산지 누적 규정 제17조 특정 생산규정 제18조 최소공정 및 가공 제19조 직접운송 제20조 포장의 처리 제21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22조 간접 물질의 처리

(1) 완전생산기준 관련 조항

중·ASEAN FTA와 중·싱가포르 FTA는 완전 획득 또는 생산제품의 항목으로 10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중·파키스탄 FTA는 12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변형기준 관련 조항

중·ASEAN FTA과 중·싱가포르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기준 및 혼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일방원산지 규정에서 세번변경을 원산지기준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정 원산지규정에서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QVC 공제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여, 역내부가가치 포함비

율이 40%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주요 공정절차 기준과 혼합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특정원산지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중·파키스탄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QVC 공제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여,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3) 원산지 보충기준 관련 조항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및 중·파키스탄 FTA는 원산지 판정의 보충기준으로 중성성분 또는 간접재료, 누적조항, 미소함량, 포장조항,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 미소가공 또는 처리, 부속품·예비품 및 공구, 세트, 전람 및 직접 운송 등의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3. 중국-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제 4 장 원산지 규정 제15조 물품의 원산지 제16조 완전히 수확되거나 생산된 제품 제17조 부분적 가치 산출 제18조 생산 특정 규정 제19조 원산지 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공정 제20조 누적 제21조 최소허용규정	제 3 장 원산지규정과 원산지관련 통관절차 제 1 절 원산지규정 제22조 정 의 제23조 원산지상품 제24조 완전 획득상품 제25조 세번변경 제26조 역내가치비율(RVC) 제27조 최소가공 또는 처리	제 4 장 원산지규정 및 관련 통관절차 제 1 절 원산지규정 제20조 정 의 제21조 원산지상품 제22조 완전 획득상품 제23조 상품특정규정 제24조 세번변경 제25조 역내가치비율 제26조 가공절차

제 4 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제22조 조립품 제23조 부속물, 부품 및 도구 제24조 재판매를 위한 포장물질 및 상자 등 제25조 선적을 위한 포 장물 및 상자 등 제26조 불분명한 요소들 제27조 직접운송 제28조 전 시 제29조 정 의	제28조 누 적 제29조 최소함량 제30조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제31조 세 트 제32조 부속물, 부품 및 공구 제33조 소매용 포장재 료 및 용기 제34조 운송용 포장재 표 및 용기 제35조 중립요소 제36조 직접운송 제37조 전 략	제26조 누적규정 제28조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가공 또는 처리 제29조 최소함량 제30조 대체가능한 재료 및 상품 제31조 중립요소 제32조 세 트 제33조 포장 및 용기 제34조 부속물, 부품 및 공구 제35조 직접운송

(1) 완전생산기준 관련 조항

중·칠레 FTA는 완전 획득 또는 생산제품의 항목으로 12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중·페루 FTA는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코스타리카 FTA는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변형기준 관련 조항

중·칠레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혼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과 혼합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세번변경을 원산지기준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정원산지규정에서 원산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RVC의 공제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중·페루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기준 및 혼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세번변경을 원산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RVC의 공제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50%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기타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특정원산지규정에서 ‘기타 기준’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특정원산지규정에서 ‘기타 기준’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기타기준과 혼합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특정원산지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중·코스타리카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기준 및 혼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세번변경을 원산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RVC의 공제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35%~60%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주요 공정절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특정원산지규정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타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당사국간에 합의를 거쳐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를 제외한 기타기준을 원산지판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혼합기준을 일반원산지규정에서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원산지 보충기준 관련 조항

중·칠레 FTA, 중·페루 FTA 및 중·코스타리카 FTA는 원산지판정의 보충기준으로 중성성분 또는 간접재료, 누적조항, 미소함량, 포장조항,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 미소가공 또는 처리, 부속품·예비품 및 공구, 세트, 전람 및 직접 운송 등의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4. 중·뉴질랜드 FTA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4 장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제24조 최소가공 또는 처리
제 1 절 원산지규정	제25조 직접운송
제17조 정 의	제26조 운송용 포장 및 용기
제18조 특혜관세대우	제27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19조 원산지 상품	제28조 부속물, 부품 및 공구
제20조 완전취득상품	제29조 중립요소
제21조 세번변경	제30조 대체가능한 재료
제22조 역내가치비율	제31조 최소함량
제23조 누적규칙	제32조 준 수

(1) 완전생산기준 관련 조항

중·뉴질랜드 FTA는 완전 획득 또는 생산제품의 항목으로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변형기준 관련 조항

중·뉴질랜드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

차기준 및 혼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세번변경을 원산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RVC의 공제법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30~50%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기타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원산지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특정원산지규정에서 ‘기타 기준’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특정원산지규정에서 ‘기타 기준’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혼합기준을 일반원산지규정에서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원산지 보충기준 관련 조항

중·뉴질랜드 FTA는 원산지판정의 보충기준으로 중성성분 또는 간접재료, 누적조항, 미소함량, 포장조항,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 미소가공 또는 처리, 부속품·예비품 및 공구, 세트, 전람 및 직접 운송 등의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제품 인정문제로 인해 관심대상이 되는 역외가공 허용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3절 평가

1. 완전생산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는 완전 획득 또는 생산제품을 나누는 항목으로 9가지부터 12가지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기술상의 차이를 보일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 다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9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⁴⁰⁾

4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송자, 앞의 논문, pp.82-87 참조. 이하의 도표는 앞의

(1) 원재료 또는 광산품

대상 FTA	규정방식
중·홍콩/마카오 FTA 중·대만 FTA 중·칠레 FTA	일방이 채굴 또는 채취한 광산품
기타 FTA	일방이 국경내에서 채굴 또는 채취한 광물질 및/ 또는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2) 식물 및 식물제품

대상 FTA	규정방식
모든 FTA	일방에서 수확 또는 적재(또는 채집) 또는 수집한 식물 또는 식물제품(뉴질랜드는 식물제품)

(3) 동물 및 동물로부터 취득한 물품

대상 FTA		규정방식
동 물	모든 FTA	일방이 수확(또는 채집) 또는 수집한 식물 또는 식물제품(뉴질랜드는 식물제품)
	기타 FTA	일방 국경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동물로부터 취득한 제품	중·코스타리카 FTA	일방 또는 쌍방 국경내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논문에 기초하여, 동 논문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중·대만 ECFA를 추가하여 도식화 한 것임.

대상 FTA		규정방식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뉴질랜드 FTA	일방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제품
	기타 FTA	일방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4) 기타 동식물

대상 FTA	규정방식
중·홍콩/마카오 CEPA	일방이 수렵 또는 어획하여 획득한 제품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중·코스타리카 FTA	일방이 수렵, 유희, 어획, 수산양식, 수집 또는 포획하여 획득한 제품
중·페루 FTA	일방이 수렵, 유포, 어획 또는 수산양식으로 획득한 물품
중·대만 ECFA 중·뉴질랜드 FTA	일방이 국경내에서 수렵, 유희, 어획 경작, 채집 또는 포획하여 획득한 제품
중·칠레 FTA	일방이 수렵, 유희 또는 어획하여 획득한 제품

(5) 영토 밖에서 획득한 물품

대상 FTA	규정방식	
	지역적 범위	조 건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영수 이외의 수역, 해상 또는 해저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	단, 국제법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개발할 권한이 있어야 함

제 4 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대상 FTA	규정방식	
	지역적 범위	조 건
중·대만 ECFA	영수 이외의 수역, 해상 또는 해저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	조건 없음
중·뉴질랜드 FTA	영수 이외의 수역, 해상 또는 해저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	체결한 관련 국제협정에 부합되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근거로 함
	일방이 등록 또는 등기하였고, 그 국기를 게양 또는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산품과 기타 물품에 대해 완전 획득한 것으로 간주	
중·칠레 FTA	영해 이외의 수역, 해상 또는 해저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	구체적 근거없이 채굴권한이 있어야 함
	일방이 등록 또는 등기하였고, 그 국기를 게양 또는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산품과 기타 물품에 대해 완전 획득한 것으로 간주	
중·코스타리카 FTA	영해 이외의 수역, 해상 또는 해저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	체결한 관련 국제협정에 부합되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근거로 함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류 및 기타 제품은 완전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으로 간주	
중·페루 FTA	일방 국경외의 수역, 해상 또는 해저토양에서 채취한 물품	구체적 근거없이 채굴권한이 있어야 함
중·홍콩/마카오 CEPA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6) 공해에서 어획한 어류와 해산품

대상 FTA	규정방식(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중·칠레 FTA	일방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중·파키스탄 FTA	일방에서 등록 또는 일방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중·싱가포르 FTA	일방에서 등록 또는 일방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중·코스타리카 FTA 중·뉴질랜드 FTA	일방에서 등록 또는 등기했고 국기를 게양하였거나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중·홍콩/마카오 ECPA	일방에서 등록했고 동시에 등록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중·대만 ECFA	일방에서 등록한 선박

(7) 공해에서 어획한 어류 및 해산물을 가공 또는 제조하여 획득한 제품

대상 FTA	규정방식(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중·칠레 FTA	일방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중·파키스탄 FTA	일방에서 등록 또는 일방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중·싱가포르 FTA	일방에서 등록 또는 일방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중·코스타리카 FTA 중·뉴질랜드 FTA	일방에서 등록 또는 등기했고 국기를 게양하였거나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중·홍콩/마카오 ECPA	일방에서 등록했고 동시에 등록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중·대만 ECFA	일방에서 등록한 선박

(8) 폐기물품

대상 FTA	규정방식
중·파키스탄 FTA	① 일방에서 수집한, 원래의 용도를 상실했고 동시에 원상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품 ② 폐기물품으로부터 회수한 부품 또는 원재료 ③ 자국의 가공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된 부스러기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① 일방에서 수집한, 원래의 용도를 상실했고 동시에 원상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품
중·페루 FTA 중·대만 ECFA	② 폐기물품으로부터 회수한 부품 또는 원재료 ③ 자국의 가공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된 부스러기
기타 FTA	① 일방에서 수집한, 원래의 용도를 상실했고 동시에 원상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품 ③ 자국의 가공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된 부스러기

(9) 완전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을 가공하여 획득한 물품

대상 FTA	규정방식
중·싱가포르 FTA	상술한 원산지 물품으로부터 획득한 제품
중·코스타리카 FTA 중·뉴질랜드 FTA 중·대만 ECFA	상술한 원산지 물품으로부터 획득한 제품 특정 원산지규정에서 일부 물품의 특정한 완전 획득 또는 생산기준 제시
중·홍콩/마카오 CEPA	상술한 원산지 물품을 일방(홍콩/마카오는 동 측)에서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특정 원산지규정에서 일부 물품의 특정한 완전 획득 또는 생산기준 제시

대상 FTA	규정방식
기타 FTA	상술한 원산지 물품을 일방(홍콩/마카오는 동 측)에서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2. 실질적 변형기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체결한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기준 및 혼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체결한 중·ASEAN,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이용했는데, 이는 FTA 협상경험이 부족했던 초기에는 실제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그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⁴¹⁾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을 고수하던 중국이 중·뉴질랜드 FTA 이후부터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와 맺은 FTA에서는 원산지규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FTA 협상의 기본 원산지규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련의 FTA 협상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이 체결한 FTA의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음과 같다.⁴²⁾

〈표 9〉 각 협정별 실질적 변경기준 비교

구 분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절차기준	기타기준	혼합기준
중·홍콩/마카오 CEPA	○	○	●	○	○

41) 김한성·여지나, 앞의 보고서, p.5.

42) 최송자, 앞의 논문, pp.81-92을 참고하여, 앞의 논문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중·대만 ECFA를 추가하여 도식화 한 것임.

제 4 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절차기준	기타기준	혼합기준
중·대만 ECFA	○	○	○	○	-
중·ASEAN FTA	○	●	○	-	○
중·싱가포르 FTA	○	●	○	-	○
중·파키스탄 FTA	-	●	-	-	-
중·칠레 FTA	○	●	-	-	○
중·페루 FTA	●	○	-	○	○
중·코스타리카 FTA	●	○	○	-	○
중·뉴질랜드 FTA	●	○	○	○	○

* ●: 원산지 판정의 주요기준, ○: 원산지판정의 보충기준

(1) 세번변경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세번변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10 〉 각 협정별 세번변경기준 비교

구 분	일반 원산지규정				특정 원산지규정			
	2단위	4단위	6단위	8단위	2단위	4단위	6단위	8단위
중·홍콩/마카오 CEPA	-	○	-	-	-	○	-	-
중·대만 ECFA	-	-	-	-	-	-	-	-
중·ASEAN FTA	-	-	-	-	-	○	○	-
중·싱가포르 FTA	-	-	-	-	-	-	○	-
중·파키스탄 FTA	-	-	-	-	-	-	-	-
중·칠레 FTA	-	-	-	-	○	○	-	-

구 분	일반 원산지규정				특정 원산지규정			
	2단위	4단위	6단위	8단위	2단위	4단위	6단위	8단위
중·페루 FTA	-	-	-	-	-	-	○	-
중·코스타리카 FTA	-	-	-	-	-	○	○	-
중·뉴질랜드 FTA	-	-	-	-	-	○	○	-

(2) 부가가치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의 부가가치기준 및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표 11 〉 각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및 계산공식 비교

구 분	계산방식	부가가치기준
중·홍콩/마카오 CEPA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30% 이상
중·대만 ECFA	RVC 공제법	-
중·ASEAN FTA	QVC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 이상
중·싱가포르 FTA	RVC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 이상
중·파키스탄 FTA	QVC 방식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 이상
중·칠레 FTA	RVC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 이상
중·페루 FTA	RVC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50%
중·코스타리카 FTA	RVC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35~60%
중·뉴질랜드 FTA	RVC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30~50%

(3) 주요공정절차 기준, 기타기준 및 혼합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각 협정별 주요공정절차기준, 기타기준 및 혼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2〉 각 협정별 주요공정절차기준, 기타기준 및 혼합기준 비교

구 분	주요공정절차기준		기타기준		혼합기준	
	일반 원산지 규정	특정 원산지 규정	일반 원산지 규정	특정 원산지 규정	일반 원산지 규정	특정 원산지 규정
중·홍콩/마카오 CEPA	○	○	○	-	-	-
중·대만 ECFA	-	○	-	-	-	-
중·ASEAN FTA	-	○	-	-	-	○
중·싱가포르 FTA	-	○	-	-	-	-
중·파키스탄 FTA	-	-	-	-	-	-
중·칠레 FTA	-	-	-	-	-	○
중·페루 FTA	-	-	-	○	-	○
중·코스타리카 FTA	○	○	○	-	-	-
중·뉴질랜드 FTA	○	○	-	○	○	○

3. 보충적 판정기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체결한 FTA는 완전하게 획득 또 중국이 체결한 FTA의 부가가치기준은 다음과 같다.⁴³⁾

〈표 13〉 각 협정별 보충적 판정기준 비교

구 분	중립 요소	누적 조항	최소 허용 수준	포장 조항	대체 가능 상품	불인정 공정	부속 품등	세트	전람	직접 운송
중·홍콩/마카오 CEPA	○	-	-	○	-	○	○	-	-	○

4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송자, 앞의 논문, pp.92-103 참조.

구 분	중립 요소	누적 조항	최소 허용 수준	포장 조항	대체 가능 상품	불인정 공정	부속 품등	세트	전람	직접 운송
중·대만 ECFA	-	-	-	-	-	-	-	-	-	-
중·ASEAN FTA	○	○	-	○	-	○	○	-	-	○
한·ASEAN FTA	○	○	○	-	○	○	○	-	-	○
중·싱가포르 FTA	○	○	○	○	○	○	○	-	-	○
한·싱가포르 FTA	○	○	○	○	○	○	○	-	-	○
중·파키스탄 FTA	○	○	-	○	-	○	○	-	-	○
중·칠레 FTA	○	○	○	○	○	○	○	○	○	○
한·칠레 FTA	○	○	○	○	○	○	○	-	-	○
중·페루 FTA	○	○	○	○	○	○	○	○	○	○
한·페루 FTA	○	-	○	○	○	○	○	○	-	○
중·코스타리카 FTA	○	○	○	○	○	○	○	○	-	○
중·뉴질랜드 FTA	○	○	○	○	○	○	○	-	-	○

제 5 장 반덤핑 조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제 1 절 개념과 유형

무역구제제도란 공정 또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다. 여기서 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치로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가 있다. 즉, 반덤핑조치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덤핑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관련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덤핑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치이고, 상계조치는 타 회원국에 의해 지급된 수입물품에 대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FTA에서의 규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덤핑 및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반덤핑규정을 배제하는 유형, 당사국간에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이를 경쟁조치로 대체하는 규정, WTO 반덤핑협정을 준용하는 규정, 당사국의 국내 반덤핑법을 적용하는 유형이 있다.⁴⁴⁾

〈 표 14 〉 주요 FTA에서 반덤핑조치 적용유형

	해당 FTA	비 고
FTA 당사국간	EFTA-싱가포르 FTA(제16조); 칠레-멕시코 FTA(제2-08조: 협정)	이들 FTA 당사국은 WTO 협정에 따라 제3국에 대

44)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조문별 유형분석(산업연구원, 2003), pp.154-167.

제 5 장 반덤핑 조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해당 FTA	비 고
적용면제	발효 1년 후 당사국들간 반덤핑 조치 철폐에 관한 협상개시); EFTA(제36조); EEA(제26조: 농산물에 대해서만 반덤핑조치 적용권리를 인정); 호주-뉴질랜드 CERTA(1990년 개정: 협정대상품목에 반덤핑조치 적용배제); 캐나다-칠레 FTA	해 반덤핑조치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됨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적용	EFTA-싱가포르 FTA(협정 제5장 경쟁조치)에서 규율	관세동맹인 EEC의 경우 공동의 경쟁정책이 적용되고 반덤핑조치 비적용
WTO 규정 준용	EC-멕시코 FTA(제14조); 일본-싱가포르 FTA(제14조)	
WTO 협정보다 기준강화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제9조: 최소 덤핑마진 5%, 재심단계에서도 최소 덤핑마진 허용, 무시할 만한 수입물량 5%, 자동재심을 3년후 허용)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 적용	NAFTA(제1902.1조); 미-싱가포르 FTA(2.13); 칠레-멕시코 FTA(제 2-01조)	NAFTA는 각 당사국 반덤핑법의 WTO 협정과 의 합치여부와 반덤핑국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양국간 패널에 부탁하도록 함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1. 중국 · 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각 협정별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 · 홍콩 CEPA	중 · 홍콩/마카오 CEPA	중 · 대만 ECFA
제 7 조 반덤핑조치 제 8 조 보조금 및 상계 관세조치	제 7 조 반덤핑조치 제 8 조 보조금 및 상계 관세조치	관련 규정 없음

(1) 반덤핑 조치 관련 규정

중 · 홍콩/마카오 CEPA는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간의 상품무역에 대하여는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 대만 ECFA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중 · 홍콩/마카오 CEPA는 양자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GATT 1994 제16조’를 준수하고, 양자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 대만 ECFA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2. 중국-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각 협정별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 · ASEAN FTA	중 · 싱가포르 FTA	중 · 파키스탄 FTA
관련 규정 없음	제 6 장 무역구제 제37조 정의	제 5 장 무역구제 제25조 반덤핑 및 상계조치

중 · ASEAN FTA	중 · 싱가포르 FTA	중 · 파키스탄 FTA
	제38조 일반규정 제39조 협력 및 협의 제40조 반덤핑조치 제41조 보조금 및 상계 조치	

(1) 반덤핑 조치 관련 규정

중 · ASEAN FTA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중 · 싱가포르 FTA는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양국은 WTO 반덤핑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국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자의적 또는 보호주의적 방식으로 WTO 반덤핑 협정상의 여하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되고, 일방산업에서 상대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개시에 관하여 적절한 문서로 제출된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그러한 신청을 접수한 국가는 타당의 관련 연락기관에게 신청사항을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 파키스탄 FTA는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제25조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1994년 GATT 제6조와 WTO 반덤핑 협정상의 반덤핑 조치, 1994년 GATT 제6조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는 본 협정 제10장(분쟁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중·ASEAN FTA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중·싱가포르 FTA는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양국은 WTO 세이프가드조치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국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방은 타방의 영역으로 향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유지 또는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파키스탄 FTA는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1994년 GATT 제6조와 WTO 반덤핑 협정상의 반덤핑 조치, 1994년 GATT 제6조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는 본 협정 제10장(분쟁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각 협정별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p>제 6 장 무역구제</p> <p>제 2 절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p> <p>제51조 다자세이프가드 조치</p> <p>제52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p>	<p>제 5 장 무역구제</p> <p>제 3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p> <p>제77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p>	<p>제 8 장 무역구제</p> <p>제 3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p> <p>제86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p>

(1) 반덤핑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중·칠레 FTA는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1994년 GATT 제19조와 본 WTO 반덤핑 협정상의 반덤핑 조치, 1994년 GATT 제6조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는 동 협정 제10장(분쟁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페루 FTA는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일방은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조사 사건을 접수한 경우, 즉시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코스타리카 FTA는 FTA는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일방은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조사 사건을 접수한 경우, 즉시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중·칠레 FTA는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1994년 GATT 제19조와 본 WTO 반덤핑 협정상의 반덤핑 조치, 1994년 GATT 제6조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는 본 협정 제10장(분쟁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페루 FTA는 FTA는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일방은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제기된 반덤핑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코스타리카 FTA는 FTA는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일방은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조사 사건을 접수한 경우, 즉시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중·뉴질랜드 FTA

각 협정별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6 장 무역구제	제62조 반덤핑
제 1 절 일반무역구제	제63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
제60조 정의	제65조 협력 및 협의
제61조 일반규정	

(1) 반덤핑 조치 관련 규정

중·뉴질랜드 FTA는 무역구제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어,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국은 자의적 또는 보호주의적 방식으로 WTO 반덤핑 협정상의 여하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되고, 일방 산업에서 상대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개시에 관하여 적절한 문서로 제출된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그러한 신청을 접수한 국가는 타당의 관련 연

락기관에게 신청사항을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국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중·뉴질랜드 FTA는 무역구제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어, 당사국은 WTO 반덤핑 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방은 타방의 영역으로 향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유지 또는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국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평 가

현재 중국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1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는데, 그 중 26건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2년 9월 현재까지, 중국은 3건의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였고, 아직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발동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현재, 중국은 2002년에 철강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였고, 한국은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유제품과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마늘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했다.⁴⁵⁾

45) 마광, “중국의 FTA 협정중 무역구제제도 관련 조항분석,” 2012년 10월 8일 한국 법제연구원 중국 FTA의 법적 분석 워크샵에서 발표자료.

〈 표 15 〉 1995~2011년 한·중 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제소국	피소국			
	중 국(151)	한 국	미 국	일 본
26건		26건	25건	14건
한 국(19)	중 국	일 본	미 국	대만/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9건	13건	7건	각 4건

이처럼 반덤핑 조치 및 상계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한국은 매우 빈번하게 동 조치의 제소국이자 피소국이 되고 있다.

1. 반덤핑 조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FTA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중·홍콩/마카오 CEPA 명문으로 반덤핑 조치의 비적용을 규정하는 방법, WTO 협정상을 준용하는 방법이 있다.

〈 표 16 〉 각 협정별 반덤핑 조치관련 규정 비교

FTA	규정방법	주요내용
중·홍콩/마카오 CEPA	반덤핑조치 비적용의 명문규정	-
중·대만 ECFA	규정없음	-
중·ASEAN FTA	규정없음	-

FTA	규정방법	주요내용
중·싱가포르 FTA	WTO 협정상 권리의무 확인	일반규정 있으며, 투명성 요구 협의를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협의 WTO 반덤핑 협정상 조치 금지
중·파키스탄 FTA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확인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중·칠레 FTA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	동 협정 제10장(분쟁해결)에 비적용
중·페루 FTA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확인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
중·코스타리카 FTA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
중·뉴질랜드 FTA	WTO 반덤핑 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투명성 요구 협의를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국 FTA가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WTO 협정상을 준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표 17 〉 각 협정별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비교

FTA	규정방법	주요내용
중·홍콩/ 마카오CEPA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GATT 1994 제16조’를 준수	-
중·대만 ECFA	규정없음	-
중·ASEAN FTA	규정없음	-
중·싱가포르 FTA	WTO 협정상 권리의무 확인	일반규정 있음, 투명성 요구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협의수출보조금도 유지 또는 채택 금지
중·파키스탄 FTA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제25조에 함께 규정 협정상분쟁해결절차 비적용
중·칠레 FTA	반덤핑과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	동 협정 제10장(분쟁해결)에 비적용
중·페루 FTA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제25조에 함께 규정
중·코스타리카 FTA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
중·뉴질랜드 FTA	WTO 반덤핑 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투명성 요구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

제 6 장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제 1 절 개념과 유형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무역구제제도에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치인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이외에 공정한 무역에 대해 부과되는 조치인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가 있다. 즉,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갑작스런 수입증가로 인해 관련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치로서, 공정한 무역에 대해 부과되는 조치이고, 그 요건은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보다는 엄격하다.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세이프가드 적용면제 유형,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준용하는 규정, WTO 세이프가드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형 및 WTO 협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에서 WTO 플러스 형에 해당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조치로서는 양자(bilateral) 세이프가드 조치, 지역(regional) 세이프가드 조치 및 글로벌(global) 또는 다자(multilateral) 세이프가드 조치로 있으며,⁴⁶⁾ 산업적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산업별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다.⁴⁷⁾

46) Kaye Scholer, 崔眞赫, “自由貿易協定(FTA)下에서의 세이프가드 制度運用方案”, 무역구제(2007), p.39.

47) 여기에는 관세화대상 농산물의 수입이 일정한 물량 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일정한 기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유입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와 섬유 관련 상품의 수입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과도기(transitional)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다.

〈 표 18 〉 주요 FTA에서 반덤핑조치 적용유형

유 형			해당 FTA
FTA 당사국간 적용면제			싱가포르-뉴질랜드 FTA(제8조)
WTO 규정 준용			한-칠레 FTA
WTO 플러스	기준 강화	양자간 조치만 규정	EFTA-싱가포르 FTA(제17조), EC-멕시코 FTA(제15조), EC-칠레 FTA(제92조), 한-EFTA FTA(제2.11조)
		양자간/다자간 조치 모두 규정	NAFTA(제801조), 미국-싱가포르 FTA(제15조), 칠레-멕시코 싱가포르(제6조), CAFTA(제8조), 미국-호주 FTA(제7조), 미국-모로코 FTA(제8조), 일본-싱가포르 FTA(제18조), 일본-멕시코 FTA(제53조) ※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지역간 조치 규정도 인정
	기준완화		EC-멕시코 FTA(제15조), EFTA(제40,41조) EEA(제112-114조)

* 자료출처: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조문별 유형분석』 (산업연구원, 2003) p.139; Kaye Scholer, 崔眞赫, “自由貿易協定(FTA)下에서의 세이프가드 制度運用方案”, 무역구제(2007), p.39를 참고하여 수정

제 2 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1. 중국 · 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각 협정별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 · 홍콩 CEPA	중 · 홍콩/마카오 CEPA	중 · 대만 ECFA
제 9 조 세이프가드조치	제 9 조 세이프가드조치	부속서 3 상품무역의 조기수확상품 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중·홍콩/마카오 CEPA는 CEPA의 적용으로 인하여 일방이 본 협정 부속서 1에 포함된 타방 원산지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동종상품 또는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야기할 경우, 일방은 서면으로 타방에게 통보한 후, 해당상품의 수출 특혜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상대방에게 통보되고, 양자는 CEPA 제19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따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만 ECFA는 부속서 3“상품무역의 조기수확상품에 적용할 양자무역구제조치”를 두고 있다. 즉 수입국이 조기수확계획의 이행에 따라, 타방으로부터 수입한 특정상품 수량이 국내생산량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증가를 야기하고, 그러한 상황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의 우려를 야기할 경우, 수입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방이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그 시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는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상의 수량제한 조치 및 제9조(개도국), 제13조(감시), 제14조(분쟁해결)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는 동시에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국-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각 협정별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제 9 조 세이프가드조치	제 6 장 무역구제 제37조 정 의 제38조 일반규정	제 5 장 무역구제 제26조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중·ASEAN FTA	중·싱가포르 FTA	중·파키스탄 FTA
	제39조 협력 및 협의 제42조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제43조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제27조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중·ASEAN FTA는 WTO 회원국인 본 협정의 당사국은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본 협정 또는 “중·ASEAN FTA 골격협정”에 따른 조기수확계획에서 승인한 관세인하 의무,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 및 본 협정 또는 “중·ASEAN FTA 골격협정”에 따른 조기수확계획에서 승인한 의무로 인하여, 상대국의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량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를 야기하고, 그러한 상황이 동종 또는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의 우려를 야기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치는 위 이행기간의 만료와 함께 중단된다. 당사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중의 관련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하지만,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상의 수량제한조치 및 제9조(개도국), 제13조(감시), 제14조(분쟁해결)는 적용되지 않는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된다. 보상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관련 양허의 정지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양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후 90일 이내에 제12조(협상기구 계획)상 기구의 주선(good offices)을 구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진행되고, 본 협정상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시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중·싱가포르 FTA는 양국은 WTO 세이프가드조치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국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로 구분하였다.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1994년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상대국이 원산지인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으나,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행위와 이유는 상대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양자세이프 조치와 관련하여, 수입국이 동 협정상의 관세인하 의무의 이행에 따라, 타방으로부터 수입한 특정상품 수량이 국내생산량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증가를 야기하고, 그러한 상황이 동종 또는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의 우려를 야기할 경우,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치는 위 이행기간의 만료와 함께 중단된다. 당사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중의 관련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하지만,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상의 수량제한조치 및 제9조(개도국), 제13조(감시), 제14조(분쟁해결)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45일 이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은 동 세이프가드 조치의 무역영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최대한 단기간이어야 하며, 제43.1조상의 기간(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협정상의 조취를 취한 경우에는 동시에 제42조(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중·파키스탄 FTA는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다자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 협정과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본 조치는 제10장(분쟁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수입국이 동 협정상의 관세인하 의무의 이행에 따라, 타방으로부터 수입한 특정상품 수량이 국내생산량에 비해 절대적 증가를 야기하고, 그러한 상황이 동종 또는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의 우려를 야기할 경우,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조치는 주관기관의 조사를 요건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발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본 협정에 세이프가드조치는 2년의 기간 적용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협정은 3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보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 상대국이 이에 상응하는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3. 중 · 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각 협정별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 · 칠레 FTA	중 · 페루 FTA	중 · 코스타리카 FTA
제 6 장 무역구제	제 5 장 무역구제	제 8 장 무역구제
제 1 절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제 1 절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제 1 절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제44조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	제69조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제78조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제45조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의 기준	제 2 절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제 2 절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제46조 조사 절차 및 투명성 요건	제7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	제79조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의 실시
제47조 예비조치	제71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기준	제80조 최종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기준
제48조 통 보	제72조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구	제81조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구
제49조 보 상		
제50조 정 의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제 2 절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51조 다자세이프가드 조치	제73조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제74조 통보 및 협의 제75조 보 상 제76조 정 의 제78조 협 력	제82조 잠정양자세이프가드조치 제83조 통보 협의 제84조 보상 및 양허정지 제85조 정 의

중·칠레 FTA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구분하고 있다. 즉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는 동 협정 제10장(분쟁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4년 GATT 제19조와 본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는 동시에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상대국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기간 동안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양자 세이프가드의 최종 기준과 관련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초 1년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고,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2회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과도기간이 5년인 상품은 1회에 한해 다시 부과할 수 있지만, 최초 세이프가드 조치의 전체기간을 경과한 후에 2차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다. ③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건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기관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조에 따른 조사이후에만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WTO 세이프가드조치 협정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된다. ④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조사결과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고 결정되지 않는 때에는, 인상된 관세는 신속하게 환급해야 하며, 모든 그러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은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한다. ⑤ 통보와 관련하여, 일방은 상대방에게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을 신속히 통보해야 하고, 잠정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또는 연장의 일방은 상대국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⑥ 보상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한 국가는 상대국과 무역자유화 보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보상 방식은 동 조치의 실시로 인해 야기되는 무역결과 또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이어야 한다.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를 실시한 상대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양허를 중지할 수 있고, 양허의 중지는 최소 30일 전에 상대국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중·페루 FTA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구분하고 있다. 즉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과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①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상대국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기간 동안에만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양자 세이프가드의 기준과 관련하여, 일방은 다음 3가지 유형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 (i)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와 기간 제외, (ii) 주관기구가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하여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산업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72조(조사절차와 투명성 요구)의 절차에 따라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iii)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 양자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적용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를 자유화 한다. ③ 조사 절차 및 투명성 요건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기관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조,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조사이후에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WTO 세이프가드조치 협정 제3조와 제4.2조 (c)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된다. ④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존속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조사결과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고 결정되지 않는 때에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로부터 발생한 보증이나 수령된 기금은 신속하게 환급해야 하며, 모든 그러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은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한다. ⑤ 통보와 관련하여, 일방은 상대방에게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을 신속히 통보해야하고, 잠정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또는 연장의 일방은 상대국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⑥ 보상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동안 동 조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무역결과 또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이어야 한다.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를 실시한 상대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양허를 중지할 수 있고, 양허의 중지는 최소 30일 전에 상대국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중·코스타리카 FTA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구분하고 있다. 즉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는 동시에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①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상대국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기간 동안에만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양자 세이프가드의 기준과 관련하여, 일방은 다음 2가지 유형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 (i)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

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또는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와 기간 제외, (ii)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또는 건립하기 위해, 주관기구가 제81조(조사절차와 투명성 요구)의 절차에 따라 취해지고 이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한 양자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및 건립을 위해,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적용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를 자유화 한다. ③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건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기관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조와 제4.2조 (c)에 따른 조사이후에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WTO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 제3조와 제4.2조 (c)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된다. ④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조사결과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고 결정되지 않는 때에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로부터 발생한 보증이나 수령된 기금은 신속하게 환급해야 하며, 모든 그러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은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한다. ⑤ 통보와 관련하여, 일방은 상대방에게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을 신속히 통보해야하고, 잠정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또는 연장의 일방은 상대국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

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⑥ 보상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한 국가는 상대국과 무역자유화 보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보상 방식은 동 조치의 실시로 인해 야기되는 무역결과 또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이어야 한다.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를 실시한 상대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양허를 중지할 수 있고, 양허의 중지는 최소 30일 전에 상대국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4. 중 · 뉴질랜드 FTA

각 협정별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6 장 무역구제	
제 1 절 일반무역구제	제 2 절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제60조 정 의	제66조 정 의
제61조 일반규정	제67조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
제64조 다자세이프가드조치	제68조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기준
제65조 협력 및 협의	제69조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구
	제70조 임시 세이프가드조치
	제71조 통 보
	제68조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기준
	제72조 보 상

중 · 뉴질랜드 FTA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구분하고 있다. 즉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1994년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상대국이 원산지인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으나,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행위와 이유는 상대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①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에 있어, 이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상대국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기간 동안에만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양자 세이프가드의 기준과 관련하여, 최초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권한있는 기구가 제69조 (조사절차와 투명성 요구)의 절차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지속적인 부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방은 비적용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동 조치가 취해진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동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해 최종 또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건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권한있는 조사기관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조에 따른 조사이후에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WTO 세이프가드조치 협정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된다. ④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조사결과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고 결정되지 않는 때에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로부터 발생한 증세 및 세금은 신속하게 환급해야 하며, 모든 그러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은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의 일부

로 계산한다. ⑤ 통보와 관련하여, 일방은 상대방에게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을 신속히 통보해야하고, 잠정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또는 연장의 일방은 상대국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⑥ 보상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한 국가는 상대국과 무역자유화 보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보상 방식은 동 조치의 실시로 인해 야기되는 무역결과 또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이어야 한다.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를 실시한 상대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양허를 중지할 수 있고, 양허의 중지는 최소 30일 전에 상대국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 3 절 평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구제규정과 관련하여,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및 중·뉴질랜드 FTA는 그 기술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즉 무역구제를 별도의 장으로 명명하여, 반덤핑 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각 절로 구분하였고, 다시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 기준, 요건, 투명성 요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통보(협의), 보상 및 정의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년간의 FTA 체결결과 무역구제에 관한 정형화된 틀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각 FTA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WTO 플러스의 형태로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각 협정별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요건과 기준 등 일부 항목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 19〉 각 협정별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규정비교

FTA	규정방법	주요내용
중· 홍콩/마카오 CEPA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GATT 1994 제16조’를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수입의 급격한 증가
중· 대만 ECFA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증가 • 조치기간: 최장 1년 • 제5조(수량제한조치), 제9조(개도국), 제13조(감시), 제14조(분쟁해결) 비적용
중· ASEAN FTA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예기치 못한 상황 요건 추가 • 조치기간: 3년/ 1년 연장가능 • 제5조(수량제한조치), 제9조(개도국), 제13조(감시), 제14조(분쟁해결) 비적용 • 보상: 발동 후 90일 이내 협정상의 기구의 주선 요구
중· 싱가포르 FTA	WTO 협정상의 권리 의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로 구분 • 일반규정, 투명성 요구 • 협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협의 • 요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증가 • 조치기간: 3년/ 1년 연장가능 • 제5조(수량제한조치), 제9조(개도국), 제13조(감시), 제14조(분쟁해결) 비적용 • 보상: 무역영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행동

제 6 장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FTA	규정방법	주요내용
중·파키스탄 FTA	WTO 반덤핑 협정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권리 의무를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상외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 요건: 수입의 절대적 증가 • 조치기간: 2년/ 1년 연장가능 • 30일 이내에 합의 실패시 양허정지
중·칠레 FTA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로 구분 • 제10장(분쟁해결) 비적용 • 조치의 부과: 수입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 조치기준: 1년/ 1년 연장가능, 동일상품에 대한 2회 부과 금지(과도기간이 5년인 상품 예외) • 조사절차: 제3조에 따른 조사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200일 초과 금지 • 환급대상: 증가된 관세 • 보상: 협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상에 대해 합의 • 양허증지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
중·페루 FTA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로 구분 • 조치의 부과: 수입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 조치의 기준: 2년 초과금지/산업구조조정요건 추가 • 조사절차: 제3조, 제4.2조(c)에 따른 조사 •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180일 초과금지 • 환급대상: 보증 또는 수령된 기금 • 보상: 2년을 초과한 조치에 대한 보상, 30일 이내 합의, 30일 전에 통보

FTA	규정방법	주요내용
중· 코스타리카 FTA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로 구분 • 조치의 부과: 수입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 조치의 기준: 2년 초과금지/산업구조조정 요건 추가 • 조사절차: 제3조, 제4.2조(c)에 따른 조사 •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180일 초과금지 • 환급대상: 보증 또는 수령된 기금 • 보상: 2년을 초과한 조치에 대한 보상, 30일 이내 합의, 30일 전에 통보
중· 뉴질랜드 FTA	WTO 반덤핑 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와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로 구분 • 투명성 요구 • 조치의 부과: 수입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 조치의 기준: 2년 초과금지/1년 연장가능 • 조사절차: 제3조에 따른 조사 •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200일 초과 금지 • 환급대상: 증세 및 세금 • 보상: 30일 이내 합의, 30일 전에 통보

제 7 장 결 론

중국은 이미 중국은 각각 1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8건의 FTA 협상을 진행중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협정별 규율대상이나 규율방법이 상이하다.

먼저,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1국가 2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민대우를 규정하지 않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FTA를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FTA에서는 모두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본 협정에 수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양허부분에 있어서도 양허대상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거나 혹은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양허예외로 분류함으로써, 양허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겠다.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중·ASEAN FTA, 중·파키스탄 FTA 및 중·대만 ECFA에서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을 도입하여 FTA 발효이전에 우선적으로 관세인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규정이 없는 중·파키스탄 FTA와 중·칠레 FTA를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고 있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완전생산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기술방법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고,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도 중·뉴질랜드 FTA 이후에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 이외에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이리함 무역구제 조치를 동일한 章 또는 節에서 규정하거나 혹은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규율대상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WTO 협정 플러스의 형태로 이를 준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중·칠레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및 중·뉴질랜드 FTA는 그 기술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중국이 다년간의 FTA 체결로 인한 다양한 경험 축적으로 인해 FTA의 규율대상에 관한 기술방법과 적용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중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다 주의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까지 다자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지역주의라는 세계화추세에 변두리에 처해 있던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현재 무역규모면에서 최대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한·중 FTA 협상이 있다. 높은 수준의 협상을 희망하는 한국의 입장과 낮은 수준부터 점진적 협상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이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협상과정에 있어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 FTA 협상에 있어 더 주의깊은 접근을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조문별 유형분석, 산업연구원, 2003.
-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 7
- 김한성·여지나, “중국·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8. 5.
-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아연 중국 연구총서 1), 서울: 폴리테이아, 2006.
- 서창배, “中國의 FTA 政策에 담긴 政治·經濟的 含意”, 『韓中社會科學研究』 제 5권1호(통권 9호).
-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초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1.
- 여지나, “중·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8. 12.
- 여지나, “중-파키스탄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7. 2.
- 여지나, “중-페루 FTA 타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9. 1.
- 여지나·김진오, “중·코스타리카 FTA 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0. 5.
- 오동윤, “중국·홍콩 「경제 파트너십 강화협정」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2003. 8.

참 고 문 헌

- 유현정, “중국·ASEAN FTA(中國-東盟自由貿易區) 전면발효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2010. 2.
- 지만수·이승신·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정형곤·김한성, 한·중·일3국의FTA 비교분석과 동북아역내국간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최 문, 이상현,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비교연구-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0집 2호, 2009.
- 최송자,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 비교연구,” 『통상법률』 제95호, 2010. 10.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6.
- 허윤, “도하개발어젠다협상과 지역무역협정”, 『창업정보학회지』 제6권 1호, 2003. 3.
- Kaye Scholer, 崔眞赫, “自由貿易協定(FTA)下에서의 세이프가드 制度 運用方案”, 무역구제, 2007.

[외 국 문 헌]

- H. Jackson John., W.J. Davey & A.O. Sykes, Jr.,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95), p.464.
- 白當偉陳瀛高, “區域貿易協定的非傳統收益”, 『外貿經濟國際貿易』,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第8期, 2003.
- 憑 雷, “均衡戰略利益 - 北美自由貿易協定的實施及經驗”, 『國際貿易』, 北京, 第10期, 2005.

蔡宏明, “中國大陸合縱連橫台商定位何處?”, 『貿易雜誌』, 台北, 第138期, 2003.

商务部研究院亚洲与非洲研究所, 『中国自由贸易区发展报告』, 中国商务出版社, 2011.

商务部研究院, 『中国自由贸易区战略』, 中国商务出版社, 2011.